#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13 발의연월일: 2025. 4. 22.

발 의 자:성일종·최수진·강선영

이종배 • 고동진 • 이종욱

인요한 • 박덕흠 • 주호영

서범수 · 김상욱 · 송석준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.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공공주택 분양 시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주거와 출산이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음.

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10년 이상 장기복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군인의 경우 불안정한 정주 여건에 따라 복무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.

이에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 인에 대하여는 5년 이상 복무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전단 중 "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무주택기간"을 "무주택기간, 가구소득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
- 2. 5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0조(주택의 우선공급 등) ①	제10조(주택의 우선공급 등) ① -		
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	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		
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	<u>에 해당하는 군인</u>		
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			
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			
수 있다. 이 경우 입주자의 기			
준은 <u>무주택기간</u> , 복무기간, 부	<u>무주택기간, 가구 소득</u>		
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			
령령으로 정한다.			
<u>&lt;신 설&gt;</u>	<u>1.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</u>		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		
	세대주 및 세대원		
<u>&lt;신 설&gt;</u>	2. 5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		
	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		
	를 양육하는 군인 중 대통령		
	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	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